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박영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92
----------	------

발의연월일 : 2022. 11. 24.

발의의원 : 박영동 의원,
김보경 의원, 양은숙 의원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노동자의 임금 및 각종 자재·장비의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여 노동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대상 범위(안 제1조~제3조)
- 나. 군수와 사업주의 책무(안 제4조~제5조)
- 다. 노동자 고용 및 자재·장비 사용 내역 확인 등(안 제6조)
- 라. 대가지급 예고와 직접 지급(안 제7조~제8조)
- 마. 계약의 제한, 신고센터 설치 및 자료제출 요구(안 제9조~제11조)
- 바. 계약특수조건 반영, 평가 및 홍보, 시행규칙 등(안 제12조~제15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노동자의 임금 및 각종 자재·장비의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여 노동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건설기계노동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건설기계노동자”란 각종 자재·장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3.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제4호에 따른 임대료를 포함한다)·퇴직급여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4. “임대료”란 공사와 용역에 이용되는 각종 자재·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말한다.
5.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하며, 군 산하 투자·출연기관을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된 임금 등을 말한다.
6. “관급공사”란 군(산하 투자·출연기관을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을 말한다.

7. “발주자”란 공사 또는 용역을 사업주에게 도급하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
8. “사업주”란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자재·장비를 임차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10. “원도급자”란 발주자로부터 공사 또는 용역을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1. “하도급자”란 원도급자로부터 공사 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관급공사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2.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3.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
4.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상 이외의 공사 또는 용역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불임금 등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를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로 체불임금 등 사업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1회 이상 체불임금 등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인 등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지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노동자와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을 말한다), 자재·장비업체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대가 청구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거나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 노동계약서, 노동자 명부, 통장사본
2. 자재·장비를 임차한 경우 : 자재·장비의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명부, 통장사본

④ 사업주는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노동관계로 인한 채권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노동자 고용 및 자재·장비 사용 내역 확인 등) ① 공사감독자는 체불임금 등의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군(산하 투자·출연기관을 포함한다)의 계약상대자(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상대자”라고만 한다)로부터 실제 투입된 노동자 고용 및 자재·장비 사용 내역을 제출받거나 열람하여 이를 점검·확인한 후, 해당 관급공사 기성 및 준공 시 군(산하 투자·출연기관을 포함한다)의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고만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가지급 예고) ① 발주자는 관급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유·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대가지급 사항을 예고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대가지급 사항을 예고 받은 계약상대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상자에게 유·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대가지급 예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경우 : 노동자 본인
2.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경우 : 자재·장비의 임대인

제8조(대가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원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급자 또는 노동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에 대한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급공사의 대가에서 공제한 체불임금 등을 하도급자 또는 노동자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항
3.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자 또는 노동자 등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주자가 관급공사의 대가에서 공제한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사항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하도급자 또는 노동자 등에게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 그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제9조(계약의 제한 등) 발주자는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금 적기지급, 최저임금 준수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제한하거나 낙찰자 결정 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센터 설치) ① 군수는 체불임금 등과 관련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① 군수는 노동자 임금 지급 현황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관급공사의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협조관계 구축)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자 및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4조(평가 및 홍보)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임금 등 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 등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임금 등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

□ **근로기준법**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의2(채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채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채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채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채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채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채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채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 등 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받은 자는 이를 체불사업주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

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

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도급 근로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